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우체국

바코드
18mm

음성안내
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건축물 재산세

받는 사람

바코드 17mm

우편반송용

납 부 장 소

은 행 방 문
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
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가 상 계 좌

온 라 인

년 건축물 재산세

음성
안내

바코드
18mm

납부하실 금액

까지 납부 시

원

[건축물]

① 산출세액	원
② 경감세액	원
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	원
법 또는 조례 감면	원
③ 납부할 세액(①-②)	원

※상세안내 후면 참조

시·군·구	재산세	수납은행 확인용
-------	-----	-------------

납세자:

기관번호	세목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
전자납부 번호	
------------	--

납기 내:	까지
세 목	납기 내 세액
합 계	

납기 후:	까지
납기 후 세액	

년 월 일

수납용
바코드

수납용

지방자치단체의 장

직인

수납인

시·군·구	년 건축물 재산세	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	납세고지서 검 영수증
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납세번호	기관	세목	연월기	과세번호
------	----	----	-----	------

납 세 자
주 소

납세자번호

과세대상

수납용

수납
바코드

세 목	납기 내 금액	납기 후 금액	과세표준	납기 내	원
재산세				까지	
도시지역분					
지역자원시설세				납기 후	원
지방교육세				까지	
합 계					

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년 월 일

전자납부 번호

담당자
문의처
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
있습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

장직인

수납인

구분

재산세(건축물)

시가표준액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

(×)

(×)

공정시장가액비율

70%

(=)

(=)

과세표준

재산세(건축물) 과세표준

(×)

(×)

세율

구분	세율
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	4%
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	0.5%
그 밖의 건축물	0.25%

※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가감 가능

(=)

(=)

산출세액

재산세(건축물) 산출세액

(-)

(-)

감면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

(-)

(-)

세부담상한 초과액

세부담상한액 =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× 150%

(=)

(=)

납부할 세액

재산세(건축물) 납부할 세액

재산세 부과 안내

과세근거

「지방세법」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

납세의무자

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

납부지연 가산세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
※ 계산식
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
세부담 상한제도

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

구제신청 기한 안내

이의신청

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
심판청구

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
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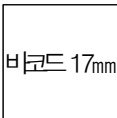
구분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
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														
지역자원 시설세	건축물의 가액 × 70% 또는 시가표준액	<table><thead>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600만원 이하</td><td>0.04%</td></tr><tr><td>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</td><td>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</td></tr><tr><td>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</td><td>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</td></tr><tr><td>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</td><td>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</td></tr><tr><td>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</td><td>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</td></tr><tr><td>6,400만원 초과</td><td>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</td></tr></tbody></table>	과세표준	세율	600만원 이하	0.04%	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	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	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	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	6,400만원 초과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
	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
		600만원 이하	0.04%													
		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													
		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													
		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													
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															
6,400만원 초과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															
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할 세액	20%														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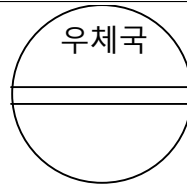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

우편반송용



음성안내

건축물 재산세

받는 사람

자동납부 현황

금융회사(신용카드회사)
예금주(소유주)
계좌번호(신용카드번호)
성명(법인명)
자동이체(납부)일

※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.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.

계좌이체(신용카드) 자동납부 통지서

귀하(귀 법인)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(신용카드)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(신용카드)에서 해당 자동이체(납부)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.

년 건축물 재산세

음성
안내



납부하실 금액

원

[건축물]

① 산출세액	원
② 경감세액	원
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	원
법 또는 조례 감면	원
자동이체 세액공제	원
③ 납부할 세액(①-②)	원

귀하(귀 법인)께서는 자동 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시·군·구

년 건축물 재산세

도시지역분
지역자원시설세
지방교육세

납세고지서

납세번호

기관

세목

연월기

과세번호

납세자

납세자번호

주소

과세대상

세목	납부할 세액	과세표준	납기 기한
재산세(건축물)			까지
도시지역분			
지역자원시설세			
지방교육세			
합계			

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직인

※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구분

재산세(건축물)

시가표준액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

(×)

(×)

공정시장가비율

70%

(=)

(=)

과세표준

재산세(건축물) 과세표준

(×)

(×)

세율

구분	세율
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	4%
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	0.5%
그 밖의 건축물	0.25%

※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가감 가능

(=)

(=)

산출세액

재산세(건축물) 산출세액

(-)

(-)

감면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

(-)

(-)

세부담상한 초과액

세부담상한액 =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× 150%

(=)

(=)

납부할 세액

재산세(건축물) 납부할 세액

과세근거

「지방세법」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

납세의무자

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

납부지연가산세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
※ 계산식
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
세부담상한제도

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

구제신청 기한 안내

이의신청

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
심판청구

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구분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
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														
지역자원시설세	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× 70%	<table><thead>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600만원 이하</td><td>0.04%</td></tr><tr><td>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</td><td>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</td></tr><tr><td>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</td><td>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</td></tr><tr><td>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</td><td>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</td></tr><tr><td>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</td><td>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</td></tr><tr><td>6,400만원 초과</td><td>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</td></tr></tbody></table>	과세표준	세율	600만원 이하	0.04%	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	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	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	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	6,400만원 초과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
	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
		600만원 이하	0.04%													
		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													
		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													
		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													
		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													
6,400만원 초과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															
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할 세액	20%														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